

제41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5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청회 개최의 건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8. 농업경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31)
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1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1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1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1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4.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15.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16.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8.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45)
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2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200248)
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2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26.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27.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2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29.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3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4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4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4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4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4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4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4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4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49.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5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5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
- 52.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 5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62)
 - 5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 55.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 5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 5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 5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7)
 - 6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9)
 - 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9)
 - 6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2)
 - 6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 6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 6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 6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 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 6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 7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5)
 - 7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 7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 7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 7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 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 7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 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2)
 -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
-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8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8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 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 9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 9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3)
 - 9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5)
 - 93.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 9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 9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6)
 - 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8)
 - 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0)
 -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1)
 - 9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5)
 -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5)
 - 1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1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1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1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 1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
1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10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10.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1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11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11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11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1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116.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17. 농어업회의소법안(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118.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1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120.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5)
12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6)
-

상정된 안건

1. 공청회 개최의 건	5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7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26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26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26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26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26

(10시43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정된 법안이 모두 120개 가까이 좀 넘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 여당에서 냈던 법안들이나 또 야당에서 냈던 법안들이 물론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그렇게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병합심사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8월 30일 날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함께 병합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건 자체로 상정도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을 살려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 원칙은 선입선출 원칙에다가 양당 간사가 요청할 시에 그걸 조정해서 하도록 서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조금 빠른 심사가 필요한 법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사안들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늦추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농지법에 이만희 의원님 농지법을 같이 병합해서 하자고 했으면 아마 저희가 병합심사를 했을 텐데 그건 저희가 놓쳤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본인이 낸 법안 중에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사정상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당 간사님, 저하고 정희용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또 의논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행정실하고 전문위원회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위에서 물론 법안 내용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일치된다고 해서 꼭 그게 병합심사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심의되는 주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제가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하기 전이라도 소위에 직권 회부할 수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의사일정 맨 뒤에 보면 직회부 안건 국회법 58조 4항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안건이 있으면 회부를 하는데요.

○윤준병 위원 소위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전체회의 안 거치고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로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셔서.....

내용들은 어차피 안건 심의할 때 죽 입안된, 발의된 법안들을 다 확인할 거잖아요. 확인하고 주제가 같으면 병합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 줬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잘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좌진들한테도 그 내용을 환기시키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좀 해서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안심사할 때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하고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상정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주제가 같은 내용은 병합해서 심사를 하자는 게 기본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이만희 의원님 농지법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리고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제가 같은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으면 가능하면 같이 병합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것은 법안 발의 순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산림청 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21대 마지막에 이 법안이 발의됐었고 또 정희용 간사께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공청회, 법안심사하고 공청회를 대개 하는데 그 절차를 바꿔서 공청회를 하고 법안심사하는 형태로 진행을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운영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산림재난방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병진 의원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맞습니다. 그래서 정희용·이병진 의원 대표발의한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심사하자는 것이고요.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은 봉태호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50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2항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 취지를 감안하여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 등의 진술 요지, 관련 법률안 등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봉태호 교수님입니다.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서정일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 유석봉 본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로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 분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분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봉태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봉태호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봉태호입니다.

우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라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림재난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환경 변화는 산불 및 병해충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발생 빈도 및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산림재난인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생하지만 이들 재난은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산림재난의 발생요인 및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재난 발생에 따른 산림환경 변화는 또 다른 재난의 취약성으로 작용하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은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이상고온, 가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 증가는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른 산림재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불, 산사태, 병해충에 대한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산림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개별적인 산림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산림재난 환경에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산림재난별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운영되는 대응체계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고자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내 재난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 기후 현상은 예기치 못한 산림재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재난은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은 산림재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림재난을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림재난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거 산림재난별 분리된 관리는 산림재난의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재난관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림재난방지법을 통하여 산림재난의 통합관리 및 운영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통합전담기구의 설립은 산림재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인 대응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은 산림재난 대응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산림재난의 발생 메커니즘 및 주요인에 대한 영향은 다르지만 기후, 지형, 지질, 임상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외적·내적 요인은 동일하며 이를 정보는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관리는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원과 인력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동시에 다른 재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통합관리체계는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상황 인식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림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내 재난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재난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산림재난의 종합적 이해 및 관리는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기 위한 산림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서정일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서정일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제는 일상화가 되다시피 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발의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푸르른 산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 그리고 피해 강도가 점차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 및 생활권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한 관점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과 사람을 모두 중요시하는 관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리의 주된 목적은 숲을 건강하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보호 중심의 기준 법체계를 보완·보강하여 산림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불·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명령 등의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보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 산림에서는 지표면이 잿더미로 뒤덮여 강우가 토양층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지표수의 형태로 흘러 계류로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 토석 그리고 나무들이 뒤이어 발생하는 토석류나 홍수류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하류로 유출됨으로써 인간생활권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림병해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를 쇠약하게 하여 결국 고사하게 만들고 고사한 소나무는 잎이 말라 떨어져 강우를 차단하여 우산효과를 감소시켜 강우가 임지에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도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가 토양과 결합하는 지지력이 약화되어 임목이 가지는 뿌리효과와 그물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의 기틀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림보호법이 지닌 통합적 재난관리의 한계를 보완·보강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산림재난방지법 또는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된다면 산림재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2022년 12월 30일에 최초 발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되었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이 최초 발의 당시의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 법안은 산림재난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제정은 산림보호 차원을 넘어 산림재난으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이것이 곧 향후 산림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법 제정이 마무리되어서 산림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봉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인 유석봉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장 유석봉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 중 하나로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라든지 파리협약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펼쳤으며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203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도 그랬지만 30°C 이상 폭염 일수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가뭄과 폭우,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전 세계는 해충을 포함한 침입 생물종으로 인해 연간 4230 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3조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라면서 세계 경제 피해를 우려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제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국내외 여행객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외래 병해충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0년간 91종의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었는데 최근 30년간 약 51종이 유입되었습니다. 그중 산림병해충은 1929년 솔잎흑파리 유입 후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등 21종이 유입되었으며 최근에는 10년간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7종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외래 병해충은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 지난 100년간 연평균 최저기온이 약 2.4°C 정도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병해충의 월동 생존율이 증가하여 국내 토착종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외래·돌발 병해충의 발생 면적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특히 88년도에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14년도 대발생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2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 전국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발생 중인 주요 외래·돌발 병해충으로는 팽나무를 가해하는 노랑알락하늘소 그리고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대벌레 그다음에 배롱나무를 가해하는 맵시흑나방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매미나방, 솔나방 등이 있습니다.

병해충 종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겨울철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해충은 평년보다 빠르게 발생하면서 대발생하는 등 피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3대 산림재난을 통합 운영·관리함이 필요하고 재난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 조직을

통합 관리·활용하는 것이 산림재난 대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성이라든지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한 공중 예찰을 활성화하여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및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매뉴얼을 일원화하는 등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반의 산림재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산림재난의 발생 위험 등 기존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재난 발생 예측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전 세계 186개국이 유엔에서 비준한 사전적 예방을 강조한 센다이프레임워크는 국가 재난뿐만 아니라 산림재난 대응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림재난 분야와 각각의 예측 기술을 융합하여 상호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첨단기술 기반 사전적 예방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산림재난 방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과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산림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보상 방안을 규정하고 국민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의 영역이었던 재난 대응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며 산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복원 등 산림재난 관리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공, 민간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림재난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근거한 것으로 발의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입니다.

올여름 우리가 다 겪으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고 또 일상화되고 그 발생 위험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여름 브라질 판타나우 화재도 그렇고요. 또 현재 미국 서부나 남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심각한 산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비교해서 10년 또는 5년 전과 산불 발생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2022년 울진-삼척 산불과 특히 지난해 4월 2일부터 4월 3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대형산불이 그 실례입니다.

정말 다행히 올해는 잦은 강수와 또 정책 당국의 여러 가지 노력 때문에 산불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언제 또다시 산불이 실질적인 또 실제적인 위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산불 또 산사태, 산림병해충 이런 산림

재난을 하나의 통합적인 법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기존에 각 산림재난별로 대응했던 것을 하나의 법적체계로 틀 안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또한 법안에 산림정책당국이나 산림과학원과 같은 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산림재난안전공단을 신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림재난 원인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재난정보 통계관리를 공단의 역할에 추가하는 한편 재난방재에 있어서도 산림 소유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몇 가지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31%가 산림 내가 아니라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해서 번진 산불들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영농부 산물을 소각·파쇄하거나 다른 농진청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화목보일러를 일제 점검하거나 소각행위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재난을 통합해서 전담할 수 있는 공단의 설립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공단이 그냥 현장을 지원하거나 이런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지를 조사하고 피해지 조사나 이런 전문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나 데이터 관리 같은 것도 산림재난안전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정안 중에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산사태 조사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봉괴 위험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사용을 제한, 금지 또는 보수, 보강, 제거하는 이런 긴급복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자 입장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유자·점유자·관리자와 같은 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 또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긴급복구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는 산불 예방이나 진화를 위해서 법안 내용에 산불진화임도, 산불소화시설, 사방댐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 인접지역에서 번지는 불이 31%라면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일정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사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에 정말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부 조항들이 보강된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법률을 제안해주시고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산림청장님, 기본적으로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 법적 정비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법안이 21대에도 추진되었던 법안이었고 당시에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산림재난별 지원 인력은 산림재난별 특성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지원인력이라는 점에서 119 구조 또 구급대와 같이 인력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 등 타 부처와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방청하고 관련 제정법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난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공단에 무상으로 공유재산·물품의 양여는 그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이전해 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에 자칫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거는 행안부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요, 지금 제정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정법안에는.

○**김선교 위원** 그러면 산불, 산사태 또 산림병해충 그래서 추가 재정 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한 234억 100만 원으로 이상이 추계됩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여기 3개 특수법인과 공공기관, 3개 기관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통합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증원은 없이 저희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예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의 협의된 사항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인력 문제, 예산 문제가 전혀 이렇게 언급되는 게 없고 또 이것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나무재선충병만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를 다 마감을 짓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다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더 확산이 되고 있지.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상당히 이 법으로만 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마나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평가 부문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의미 있는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산림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진술인 네 분 중에 사실은 문제에 찬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청회면. 그런데 다 찬성만 하시는 분만 계셔서 사실은 이규태 회장님은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 주셨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하셔서…… 공청회가 취약점이나 법안의 내실 이런 걸 기하기 위한 공청회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산림재난 하는데 이걸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 소위 산림재난이라고 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산림의 재난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산불과 산사태 또 병충해 이 내용들이 서로 원인이 달라서 과연 종합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산불하고 산사태하고는 산불은 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산사태의 경우에는 대부분 폭우가 내리거나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서 원인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다른데 그걸 유기적으로 대응하면 효율적이겠다,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든다, 이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 대피명령요청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하는 권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경우에도 지금도 산림보호법이나 또 재난 관리 기본법상에서도 유기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 어떤 부분이 기존에 있는 법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가미돼서 이 재난관리법이, 이 방지법이 입법화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권원과 다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이 부분들.

특히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려스러운 게 지금도 소방하고 산림청하고 산불 실제 진압 할 때 과연 통제 체계가 어떻게 되냐, 일원화된 통제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지금 가닥을 정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랄까, 보완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산림보호법에서 내면서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공단 설치하겠다는 조직적인 내용인데 지금 내용적으로 공단의 조직표를 보면 기존에 3개 협회 내지는 센터의 인력 170명을 그대로 이쪽도 17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인구 증감은 뭐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 현재도 지금 협회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법에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소위 산림 생태계랄까, 산림 설계 생태계 이런 기구와 관련해서 독점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배제하거나 경쟁 체제로 바꾸게 되면 인력이

훨씬 더 줄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인력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대로 공단화하면 기존에 제기되었던 그런 산림 생태계 내 여러 기관들 또 민간과 연계되어 있는 체제들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되거나 또는 인력이 줄어야 될 내용이 줄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답변을……

○소위원장 이원택 예, 지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크게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산불이나 재선충같이 원인은 다르지만 현상은 나무가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죽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죽은 나무의 잎의 양이 없어져서 강수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우산 효과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또 뿌리가 흙을 잡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사태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복구 단계에서도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으로 인해서 산림이 피해가 됐으면 그와 관련된 복구와 관련된 방법도 통합적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피 관련돼서, 대피명령과 관련돼서는 이 법안에서는 대피명령을 산림청장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산림청장이 지자체장한테 대피명령요청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피명령과 관련된 거는 산불, 세 번째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대피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피요청과 관련된 것에서는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상 데이터라든지 인적 데이터라든지 상황,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대피요청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 제정법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정희용 의원님이나 이병진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작년 23년도에 경북 북부 지역 산사태로 인해서 열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지자체장에게 계속 문서로 했습니다. 했는데, 재난 기본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는 일부 정부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대피명령과 관련된 요청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관련 법령에서 산림청장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피명령요청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자체의 통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산불이나 산사태나 산림병해충의 모든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이나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산불이 나도 현장에서 산불지휘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 지휘를 하게 되는데 지휘본부장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규모가 커지면 도지사로 올라가고 또 2개의 시도에 의해서 산불이 커지게 되면 그때 산림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우리 정부 수립 아래로 산불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상에서 계속 연속돼 가지고 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제정법에서 제안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네 번째, 재난안전공단 관련해서 3개의 단체가 합쳐지면 인력이 좀 줄어야 된다든지 또 민간과 관련된 독점적인 지위, 배타적인 지위 때문에 이런 것들의 우려를 좀 말씀

하시는 데 현재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대형화·복합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인원이라도 통합을 해서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은 주로 겨울에 일을 하게 되고요. 산불은 봄철에 주로 일을 하게 되고 산사태는 주로 여름철에 일을 하게 됩니다, 3개 단체가. 그 외의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3개 단체를, 3개 기관이나 단체를 묶으면 저희들이 연중 또 고용…… 연중 또 산림재난이라는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재부하고 이 관련된 것들을 협의를 할 때도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증원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림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거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도 보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는 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유형으로 해서 한 것들이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이건 뭐 입법재량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림보호법이 있어요, 보호법이. 여기서 분리했을 때 추가적으로 산림보호법에다가 함께 입법화해도 되고 분리해서 같은 내용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분리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산림재난방지법을…… 산림보호법에서 기존에 있는 규정들 태반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분리해서 개별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나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보호법에서 산불과 산림병해충 분야가 있고요. 산사태는 사방사업법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보호법을 분법화하지만 사방사업법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 가지고 이제 정법안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 진화 인력은 보호법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산사태 관련된, 산사태 대응 관련된 인력은 사방사업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정법에서는 산림재난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별도 다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법하고 사방사업법하고 또 일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세 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범주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정법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분 하시고……

○소위원장 이원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는 이 법안이 모처럼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으로 봐지고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 생산적인 논의 끝에 연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산방산 아시지요?

유석봉 본부장님께……

○**진술인 유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폐일나무좀은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원균입니까?

○**진술인 유석봉** 제가 잘 못들었는데……

○**문대림 위원** 폐일나무좀.

○**진술인 유석봉** 재선충 쪽은 아는데 좀 쪽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대림 위원** 폐일나무좀에 대해서 산림청장님은……

○**산림청장 임상섭** 저도 잘 모르는 병해충입니다.

○**문대림 위원** 폐일나무좀에 대한 생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방산은 문화재지요, 산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인데 정상부의 나무들이 전부 말라 죽고 있습니다. 폐일나무좀 또 하단부의 소나무들은 재선충으로 말라 죽었고 그 옆 지역은…… 해송들은 그렇게 해서 재선충으로 말라 죽었고 그 옆 지역들의 소나무는 수종이 다른 리기다 수종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때문에 말라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병원균에 대한 생태 연구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면 산방산 일대의…… 제주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사라져 가고 있는데 물론 기후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병원균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 폐일나무좀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꽤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리고 재선충과 관련해서 솔수염하늘소 서식지는 지금 방제 이후에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작년도에 107만 그루가 발생했고요, 올해는 4월 달까지 총 발생한 게 90만 그루였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증가 추세에……

○**문대림 위원** 그러면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지에 대한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이런 산림병해충 재난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2014년도인가에 217만 그루까지 발생했다가……

○문대림 위원 방제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방제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독성 농약, 생태계 파괴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지를 박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다시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이고 이러면 방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한 국가적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뉴스에도 나왔을 텐데 산방산 정상 부분 나무들이 말라 죽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 원인을 산림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산방산 정상……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이라고 봐요, 저는. 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산방산 지역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다는 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 봤다고 말씀드린 것은 폐일나무좀이라는 걸 지금 처음 들어 봐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문대림 위원 폐일나무좀이라는 얘기는 저도 생소하지요. 생소한데, 그 당시에 각종 보도에 의하면 폐일나무좀을 원인으로……

폐일나무좀이라는 병원균을 모르십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때까지……

○이만희 위원 아니, 곤충이에요, 곤충.

○산림청장 임상섭 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희 위원 좀이 세균이 아니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 곤충이야, 곤충.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 산림청에서 주로 통계를 관리하거나……

○문대림 위원 이게 제주지역 이외의 산림에도 이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산방산의 경우에는 바위산이고 바위산을 지탱하고 있는 상당 정도가 나무 뿌리에 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현실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방제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를 좀 축약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답변도 좀……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이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법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마련돼서 산림재난에 대해서 정말 통합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산불도

그렇고 병충해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이게 분절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가중되기 때문에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법안 중에 존경하는 정희용 간사님이 내신 법안에는 없는데 이병진 의원님이 내신 법안 10조에 보면 건축허가 등의 협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관련해 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산림과 잇닿은 지역이라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골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부락 단위가 다 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시골 동네 농가의 증개축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전에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자체에서 나온 의견들도 저희들이 다 해소를 해서, 설명도 하고 양해를 시켜서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서의 이런 많은 건축행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규태 회장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법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게 형사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령 위반인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네요.

43조인가요, 43조는 병해충이군요. 병해충의 경우에도 수목·가지·뿌리 등의 제거 있고 그다음에 쭉 있는데 방제나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림 소유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 그리고 또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존의 법안에서 가져온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규태 회장님께서 우려 주신 것만큼 이게 종종의 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또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방제라든지 산사태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단순히 병해충 방제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심지어 헬기 방제를 하는 정도에 이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두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것도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명령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로 잡니다. 과태료 사항으로 정해야 해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면서, 반면에 여기 법 80조에 보시면 과태료 사항 중에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형사처벌로 해서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법사위에서도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축조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사항과 벌금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산 소유자에 대한 기본권이라든지 실태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행되어 왔고 앞으로 이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재난방지기관장하고 건축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작년도 경북 북부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때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으로부터 피해가 난 지역까지 최대 2km가 됐습니다. 그게 산사태가 계속 가중돼 가지고 2km가 됐는데 귀촌하시는 분들이 라든지 농지를 개간하시는 분들이 산사태나 토석류가 흘러내릴 수 있는 데들을 예상을 못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북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산림과 잇닿은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산림재해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토석류가 흘러내릴 수 있는 지역을 피해서 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산림재난기관장이라는 것은 산림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내에 있는 산림 부서하고 시장·군수 아래에 있는 재난방지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는 조항을 만들어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산사태의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계자에게 방재 명령 관련된 게 과다하다는 지적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제 산에다가 사방댐을 지으면 하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제 산에다가 사방댐을 짓자고 관계기관에서 산주 동의를 요청하면 ‘내가 왜 내 산의 땅을 줘서 사방댐을 지어야 됩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 재산상의 피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방재를 해야 되시는 분들하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령을 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 왜 제대로 지정이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산에 대해서, 내 산은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왜 내 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벌금과 관련된 수준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보충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호선 위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사방댐이라든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화,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하면 악용될…… 나중에 가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공청회를 마칠까 하고요. 지금 손 든 분이 두 분 정도 되는데 두분 듣고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아까 손 들었고 이만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내용,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단을 통합 구성·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산림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 앞의 세 가지는 사실은 이게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법이 없어 하더라도?

이것은 산림청 내에서 산림재난과 관련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마치 이 법이 없어서 그것이 산림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들려서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재난 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기술·정보의 국제 교류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의 목적은 앞의 세 가지가 아니라 맨 뒤에 있는 네 번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단 설립해야지요.

그런데 그간 산림청의 여러 가지 국감이나 여러 업무 과정에서 지적돼 왔던 것들을 쭉 지켜보면 이게 본래 고유의 목적을 위한 설립이라기보다 산림청 퇴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전관예우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단 설립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 가지 목적은 실제로 산림청에서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굳이 이 법에다가 따로 담으면서 뒤에다 본래의 목적을 숨겨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이 법안 만들면서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3개, 산불방지기술협회·치산기술협회·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3개를 합쳐 가지고 공단을 만드는 법안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3개를 합치면 사실은 본부장급 이상 직위가 더 감소합니다. 현재 3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1개의 공단으로 만들면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직위는 오히려 더 줄게 됩니다.

줄게 돼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대상이 아니었다,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합쳐야 되냐면 산불방지기술협회에 지금 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날 때 40명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진단 해야 되고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도 지금 36명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선충 발생하는 것을 전국 단위로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력입니다.

그리고 치산기술협회 지금 94명인데 산사태라든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런 인원들을 다 합쳐서 170명 정도를 산불·산사태·재선충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3개를 통합하겠다는 얘기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퇴직공무원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게 법을 제정하는 데 본목적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희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도 그렇고 이병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도 안고 그렇고, 정희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은 울진·삼척, 우리나라 최대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문제점들을 추려 가지고 정리된 법안들이고요.

이병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강원도 북부지역에 열세 분이라는 10년 이내에 최대의 사상자가 났을 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안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제 질의 상당 부분은 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 청장님은 거의 평생을 산림청에서 일하셨는데 그 세 가지 분야, 산불·병충해·산사태 이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3개 부분의 세부 분야 협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력들이 최소한 서로 간에 재난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대처 방법은 알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더……

문금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문금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3개의 협회가 다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3개의 협회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건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 봉태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었는데요. 처방이나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거나 이럴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산불이나 산사태나 좀 필요하지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인자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있는 분들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업무 능력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중복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해 왔던 업무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교육훈련 통해서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 경험이 많다 보니 지자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규제기관이 하나, 상급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거든요.

○**산림청장 임상섭** 여기 제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단은 사실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산림청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해야 될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다 위임이나 위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금주 위원** 취지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용역 같은 거랄지 이런 부분들을 암묵적으로 강요할 수가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우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이 법 이전에 어떤 산불이 났을 때나 산사태가 났을 때 지휘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바뀐 게 있습니까, 현재하고?

○**산림청장 임상섭** 현장지휘본부, 현장에서 지휘하는 체계는 과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해서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지휘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지휘체계랄지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이중, 오히려 상급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제가 그런 법의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산불·산사태 또 산림병해충, 지금 제가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지자체에서 하지. 책임도 지자체장이 져야 되고 지금 그런 여건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감시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한 1만 명 가까이, 9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선교 위원** 그 예산 어떻게 지원해 줘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감시원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특수진화대라든지 예방전문진화대는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산불이 적거나 이렇게 대형으로 났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일부에 불과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헬기 없으면 못 끄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다이어트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에 인허가 내주는데 2km 떨어진 데를 어떻게 예측하고 지자체장이 해 줍니까? 그건 책임을 산림청에서는 안 지겠다는 얘기지.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정말…… 지금 헬기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얼마 전만 해도 지자체에서 다 100% 지원을 해 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기의 일당은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산사태도 경사도가 25도 미만 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시켜서…… 지자체장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산림청의 이 법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강화시키는 거지.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감시원 말씀만, 여러 가지 말씀인데 감시원 말씀드리는데 감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서 지방비로만 되어 있고 국고보조가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니까 임금도 제한돼 있고 고용되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산사태·병해충을 연중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산림재난대응단을 하면 좀 더 좋은 인력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끈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으로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작년 2023년도 산사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산사태 관리 또 대형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니까 산불 관리, 거기다 재선충병이 지금 또 계속해서, 확산세를 잡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또 경북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났고 충북지역에서도 많이 났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산림청과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교수님, 본부장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산림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소될 수 있도록,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은 다음에 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심층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분의 교수님, 본부장님 또 이규태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규태 회장님께서, 네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다시 이제 법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양당 간사 간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의가 조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3시47분)

○**소위원장 이원택** 먼저 의사일정 3항부터 7항까지 이상 5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범수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감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주요 사항 설명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3시에 전체회의가 상정돼 있고 그래서 2시 40분까지 조금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전체회의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용을 해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위원님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농지법은 5건인데 먼저 의사일정 3항, 4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번의 2페이지입니다.

주제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개정안은 6조의 3호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농의 농지 매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여지지만 21년 8월에 LH 투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개정안을 당시 제안했던 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1년 이후에 농지 거래량이 24% 또는 37%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당시 21년 8월 달 농지법 개정 연혁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개정안은 6조에 제3호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영위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도 농지를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이 가능하고 농지전용을 통해서도 치유농업 사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농식품부가 농업법인이 영위 가능한 사업 범위를,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4호의2를 신설하고 있는데 치유농업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치유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서 검토 의견과 동일합니다.

9페이지에도 제23조의 5호의3을 개정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을 하려는 자 등에 대한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타인이 농업활동을 대신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치유농업이 어떠한 사항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제32조에 제10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를 첫 번째로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시설, 두 번째로 농약 등의 판매업 시설을 각각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인 등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업 고용인력 거주시설은 이미 농지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어 설치 가능하고 있고 농약 등 판매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업 고용인력의 거주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외에 농지전용신고를 통해서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금년 7월 3일 날 개정·시행되었고 농지 면적이 최근 10년간 매년 감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에 제6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수산업 고용인력 거주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서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용이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농어업인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고용인력 거주시설 관련 농지법 시행령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농지법 총괄적으로 지금 5건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부적으로 각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농지법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농지 소유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 그다음에 농지 이용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것 또 농지의 전용 규제 방식도 조금 완화하는 것 이런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늘려 주는 것 이런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또 농업진흥지역제도라든지 농지보전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농지관리체계를 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연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당겨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나와 있는 조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금 주말·체험영농을 진흥지역 외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해서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생각은 진흥지역이 30ha 이상 집단화된 농지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진흥지역의 한 가운데 갑자기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규모화의 취지나 이런 것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어긋나지 않게 이쪽 가 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가 조례로 단지를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하고도 조화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를 소유해 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치유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가능하게 농지법에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을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것, 이것은 지금 조문에는 안 넣으셔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문 정리할 때,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나 이것도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농업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법에 지금 넣지 않으셔도 현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고용인력 거주시설하고 농약 등 판매시설 문제입니다.

13~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고용인력의 거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시설 이런 것들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고용해 가지고 그런 고용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이렇게 농가 단위로 하지 말고 기숙사 형태로 전반적으로 크게 해서 지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방식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계획법상 거기하고 좀 충돌이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숙사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법상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다음에 공업용지 또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같은 농림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풀어 주는 걸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풀게 된다면 이 법에서 지금 제시하고 계신 내용들이 전부 다 같이 반영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판단을 해 보면 농협이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사 가지고 농약 판매시설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는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농약 판매시설이 필요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APC나 RPC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게 돼 있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농약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농약 판매시설도 진흥지역 안에 설치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 농약 판매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어차피 전용허가를 받아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APC나 RPC는 이미 지어져 있고 그 면적 안에서 부대시설로 할 수 있게 풀어 주면 그것도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풀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논이 있는 진흥지역 말고 마을회관 같은 데, 농업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회관 같은 데 안에다가 농약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부대시설로 지을 수 있게 허용해 주면 오히려 농업인들도 더 편하고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신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농업인 주택으로 할 경우에 이미 신고로 전용할 수 있게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기숙사를 허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국가계획법하고, 그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것 작업을 먼저 국토부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수석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농지전용신고로 해서 풀 수 있는데 굳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로 또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만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페이지에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굳이 개정하실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차관님께서 농지법 전면 개정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실 있게 전체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관련돼서 지금 농지법과 관련된 몇 가지 협안들이 있는데 그 협안들이 정부에서 검토할 때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다 완결된 다음에 위원들에게 공유하면 또 수요가 있는 부분들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종 결론 내기 전에 위원들에게 정부의 입법안을 공유해 주면 그때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협안이나 고민거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농지법과 관련돼서 일면에서는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데 저는 큰 틀에서 규제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투기를 또 조장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대도시권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도시권의 투기적인 요소를 최대한 억제해서 농지가 농사의 본연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에서는 투기적인 요소를 사전에 억제해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틀을 만드는데 그 길은 인구소멸지역과 대도시권을 구별해 내는 것 이게 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함께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야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데 일단은 설사 이 내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전면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니까 저는 그때 의견 반영되는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도 입법 발의한 내용 중에 태양광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 낼 거냐 하는 내용이 지역 농촌사회에서 소득안정 보장 차원에서 농지와 잘 조화롭게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내수면 양식업 하는 과정에 농지를 활용하는데 그 농지 활용하는 과정이 까다롭게 돼 있고 10년 지나고 나면 또 철거했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은 농업시설과 같은 내용이라면, 축사나 이런 것과 같은 범주라면 같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농지의 이용·규제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 정부에서 입법안 하실 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면 11월 정도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덕흠 위원** 차관님, 14페이지 아까 얘기하신 고용인력 거주 위한 시설, 농약 판매업 하는 것 이게 보통 마을마다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필요한 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자꾸만 줄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는 데는 이제 농협에서, 하는 데서 같이 필요해서, 농협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보면서 농약이나 기자재를 살 수 있게 편리성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으로 갔을 때 농약이라든가 기자재를 팔 수 있게끔 진흥지역을 약간 풀어 주면, 그것도 이제 전체를 풀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 그건 큰 면적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 단위도 그렇고 군 단위 쪽에서…… 그런 쪽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풀리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해 가지고 그 정도는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농지 안에 농업인의 편의시설, 농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창고 형태가 됐든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박덕흠 위원** 연관성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제한해서 허용을 해 주면 좋겠다, 연관성이 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차관께서 연말까지, 12월까지 농지법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겠다, 빠르면 11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뺄 건 빼고 통과시킬 것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의원님들의 발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설명한 법안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제가 언뜻 볼 때 이것은 전체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송석준 의원님 법안하고 또 이종배 의원님 법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의사일정으로 5번인데요.

심사자료 2번의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나목을 현행 ‘농축산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축수산물’로, 농지의 범위에 수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농업과 수산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법 등에서는 전답과 양어장 등의 지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양식업 양식장이 뱈장어 양식장 646개, 송어 양식장 230개 등 총 1659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수산물 생산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법의 취지상 농지는 농업용도로 쓰이는 게 농지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농지에 수산물 생산시설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12년까지 풀어 줄 수 있게 돼 있고 만약에 그게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병 위원** 취지가 안 맞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지에 수산이 본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위로 넣는 것은 성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 8호인가 전용 시설, 전용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축산 시설 이렇게 들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축산은 이제 농지에 할 수 있는 행위로, 버섯 재배나……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전용 대상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축산 전용을 안 해도……

○**윤준병 위원** 8호에, 그 규정을……

제가 이것 내용 법안 발의를 해 놨는데 상정을 안 해 놔서, 이것 직권상정 같이 넣어야 되는데 안 해 놓고 미상정해 놓고는……

○**소위원장 이원택**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준병 위원** 7호에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생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용.

○**윤준병 위원** ‘다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을 넣고 거기에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양식장 등 수산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넣으면 실제 소위 말하는 양식장이나 양식장 수산물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지금 농지와 같은 용도로 쓰면서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담아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입법 발의를 해 놨었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렇게 넣으면 지금 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소위 우리 농산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

제를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으로 답을 수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아무튼 취지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윤준병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아마 법안 발의가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걸 한번 제가 더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부탁인데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제가 아직 못 봐서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님,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심의하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이만희 위원이 말씀하신 유사 법안은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윤준병 위원**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때 하는 내용은 대부분 30일 도과된 것 직권상정…… 의무적으로 상정되는 것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연관되면 그것을 미리 걸러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일치가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일 도과가 아니더라도 유사 법안은 같이 검토해서 여야 이견이 없다면, 간사 간에 일이 없다면 상정해서 신속하게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토론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데,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토론도 안 되고 하니까 같이 붙여 놓으면 좋은 거지.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 법안심사 때 상정이 되겠지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유사 내용이니까.

○**윤준병 위원** 쟁점이어서 실제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얘기한 게 이것보다 훨씬 더 입법적으로 효율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전용에, 그쪽 조항에다 지금 넣으신다는 취지시잖아요?

○**윤준병 위원** 예, 전용에다 넣으면 그것 해서 그 절차, 내용에 그대로 넣으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농지법에 대해서 신중 검토 필요, 또 지금 차관님 말씀은 12월에 전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1대 때도

폐기된 법안이 상당히 많고 진전된 것은 1건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제정되는 게 아니고 개정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처리해 주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을 12월 달에 전면적으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사실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개정을 해 주셔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A 의원이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 그래서 법안을 올린 건데, 예를 들어서 ‘신중히 검토 필요’ 해서 전문위원님은 이런 방안을 내고 차관님은 또 12월 달에 전면적으로 한다, 포괄적으로 다 해서…… 예를 들어 농지법의 면적을 확대시켜 달라 그런 게 죽죽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 다 검토할 필요,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저희들이 내고 있는, 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나온다고 하면……

○**김선교 위원** 농지법 같은 것 막 이삼십 년이 돼서 옛날에 그냥 해 놨던 것 여태 개정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돌아가시기 전에 땅 좀 팔아서 편하게 살게끔 해 달라 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처리를 하느냐 이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전용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농지의 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용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농지에서 하도록 해서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지자체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냥 정부하고 상관없이 지자체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틀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개정해 놨다가 만약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고 하게 되면 이게 시행하기 전에 다시 또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김선교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그래도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 건 한 건 냈을 때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저는 법안소위의 임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주말·체험 농장이라든가 또는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자체한테 권한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자체는 어느 섹터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쟁점이 있어서 조금 아까 심사 보류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이 법안은 지금 취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농지에서 수산양식을 원활하게 하게 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전용에서 아예 빼 버리든지 아니면 전용 절차를 한번 거치고 12년 이후에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 둘 중의 하나인데 아예 전용 절차에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농지에서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위로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수산업이니까. 그런데 농지에서 이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농지의 성격이 있는데—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에—그런데 이게 전용을 안 하게 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뭔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두고 이게 전용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아무데서나 농가가 원하면 이것을 수산양식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걸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데 지자체가 어떤 계획하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12년 하고 연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법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부가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현장의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고.

다만 이 법안은 윤준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하고 또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병합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내려줄 건지도 그때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법안……

○**박덕흠 위원** 잠깐만요.

○**전종덕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박덕흠 위원** 지금 전용 절차 할 때 지자체에 권한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박덕흠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수산업을 하든 양식장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하는 분들은 다 거기…… 결국 양식장이라는 것은 거의 내륙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농민들이라고 봐야 돼요. 땅만 농지라는 얘기지 일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서 부업,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사도 지으면서 양식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걸 간편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인구도 소멸되잖아요. 지방이 소멸돼 가는 판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자체에다가 일임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오늘 위원님들도 농지법 관련한,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5개나 올라와 있고 또 윤준병 위원님 내신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으면서 농림부에서도 전면 완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근본적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토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또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 제한한 사유, 그다음 사실 농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당장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병충해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심각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역할, 농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 보전, 생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자꾸, 오히려 더 강화하고 농지가 농업생산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생태 보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농지를 오히려 더 규제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하는 것이 농림부가 가야 할 철학과 정책 방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심지어는 농업진흥지역까지…… 거주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짓는 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내용들이, 물론 재산권 행사라는 부분도 있지만 편리를 이유로 농지에 이것을 지어서 시설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농지가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농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농림부에서 전면 완화, 소유 제한 문제나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기후위기 대책이 따로 있고 규제 완화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업정책 방향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 방향에 맞춰서 잘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안을 내야지 자꾸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농업을 더 육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을 더욱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방향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농림부에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또 기후위기 시대 대비해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러니까 식

량안보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요구하고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가 또 필요하다는 요구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고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법을 아무리 어떻게 만들더라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 안에서 법률로써 저희들이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유를 벗어나서 농업 용도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농업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농지의 거래가 막히고 농업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임대로 나타나고 불법으로, 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자체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각 지자체 시·도 단위로 농지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 정책 방향,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자체 권한을 용인해 주되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농업의 변화되고 있는 상황 이게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시설농업이 늘어나고 스마트팜이 늘어나고 수직농장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분명히 농업의 일종이고 그런데 농지에서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 농지를 아주 강하게 규제해서 그런 것들은 저 바깥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이 영농활동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입장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데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풀어 보자.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지법 개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관님께서 농지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그게 정부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다,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인들 수요에 즉각즉각 반응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행정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그래 버리면 위원님들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쟁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바로 개정 작업을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건 이미 법안 개정이 됐으니 바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다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바로바로 개정 작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검토 또 권한 배분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취지와 뜻이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심사를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두 번째 법안은 다음 윤준병 의원님 법안 심사할 때 같이 검토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3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조의 제2항에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 중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 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농지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종중의 경우 현법재판소에서 현행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전통사찰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농지를 소유한 종중 수는 7만 8372개로 전체 농지의 2.1%, 사찰의 경우 982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농지의 0.1%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건 사실은 근본적으로 종중이나 전통사찰에 대해서 농지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제도는 96년 이전에 종중이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부터 농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전통사찰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시험실습지로 보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유를 할 수가 있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제로 실습지로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위 법령에서 그 사찰이 있는 연접 시군에 있는 농지를 전통사찰이, 예를 들어서 시주를 받거나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 그 경우는 실습지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있

습니다. 다만 이게 그 연접 시군이 아니라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걸 실습지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를 시주를 했을 경우에 직접 소유가 안 되니까 명의신탁을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문제가 돼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제도 자체가 현재로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보다 저희들이 제안드릴 수 있는 건, 사찰들이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유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터 주게 되면 농지질서 자체가 조금 문란해지는,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사찰이 영농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만들게 되면……

○**전종덕 위원** 농사도 안 짓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손 한 번 들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착오가 없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윤준병 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엄청 나게 이와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종종의 농지 소유 또 저는 사찰까지 이렇게 깊이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종종과 관련해서는 꽤 많은 이해 갈등이 있고 또 예전에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잡하고 모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처리도 안 된 사례도 있어서……

농지법 차원에서 소유 허용하는 게 쉽지 않다, 여기까지는 일용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실제 소유 실태, 운영 실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한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당장에 허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면 개정안을 만드시면서 이 부분도 하나의 주요 과제로 넣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지 이 내용을 고민해 갖고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종종의 경우에는 등기가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종종에 공동으로 재산권도 같이 나눠서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본인의 소유로 해 가지고 끊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미리 팔아 가지고 배분을 해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흡수하는 방법, 농지은행을 통해서 흡수하고 그걸 다시 그 종중에 있는 누구한테 임대해 줘서 영농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건 조금 더 케이스를 한 번씩 더 따져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방금 종종 땅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면, 이 법안도 전체적으로는 농지법 전체 개정할 때 같이 재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종종 땅 관련해서는 개선안을 농식품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 법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심사자료 4번입니다. 농지법 마지막 법안인데요.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나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농업생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 스마트팜 등의 부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스마트 작물재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현행법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농지법과 시행령 등이 최근에 개정됐고, 한편으로는 농림부가 특정 지역에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수직농장의 경우에는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일시사용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내용은, 이 취지는 저희들이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조문의 규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번 법안소위를 할 때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 조항에 넣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이용행위라든지 이런 쪽에 넣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입법적으로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축산물 생산시

설' 그래 갖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팔호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정의 조항에 넣기보다는 이걸 세부적으로 이용행위에 넣을 때 그렇게 해서 풀어 주는 게 조금 더 입법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저희가 다음번에 올 때 만들어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혹시 질의……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요.

아까 차관님께서 농지법 개정의 기본 원칙, 차관님 개인 생각이지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번째, 농업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할 수 있는…… 어쨌든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상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IT화, 스마트화는 이제 대세다. 이러한 시설들이,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농축산 생산시설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당연히 농축산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받쳐 줘야 된다, 예산으로도 받쳐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법은 단순한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예외나 특례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농업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영농행위だ라고 보는 쪽으로 해서 허용을 하되,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가설건축물이든 이 형태로 지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농지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뭔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들어설 수는 없으니까 어떤 계획하에 해야 될 것 같고 지자체하고 권한 설정이라든가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음 소위 때 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농지법 심사하면서…… 정부가 11월 농지법 전체적인 것의 안이 완결될 때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병합 심사할 것을 2개로 분류해서 다음 심사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농업정책관 윤원습
산림청
청장 임상섭

○출석 진술인

봉태호(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교수)
서정일(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유석봉(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장)
이규태(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